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기원 정관 제10조 제9항에 따라 국기원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원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9.>

제2조(적용범위) 원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원장선거를 위탁할 경우 원장선거에 관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 12. 9.>

제2장 선거관리기구 구성 등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국기원 이사장(또는 권한 대행자를 말함. 이하 같다)은 정관 제10조 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한 별도의 선거관리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원장 임기만료일 4개월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제45조에 따른 재선거와 정관 제10조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 12. 9.>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인 선정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7. 선거제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 또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산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④ 이 규정에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원장이 사망하거나 정관에 의해 사임, 해임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을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의 위탁) ① 정관 제10조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할 경우에는 원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위탁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② 제1항에 의한 선거관리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선거인 선정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
2. 투표에 관한 사무
3. 개표관리에 관한 사무(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무 포함)
4. 선거제도 및 홍보에 관한 사무
5. 법, 정관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등을 협의 조정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국기원과 이해 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인사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0. 12. 9.>

② 제1항의 국기원과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에 재임(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이 아니며, 이사장, 원장 등에 의해 임명, 선임, 위촉돼 그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9.>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정관 제16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되, 직무대행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구성 및 지명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국기원의 이사와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이사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5. 27.>

⑦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1명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⑧ 선거인단 구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7.>

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해당 원장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기원 정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12. 9.>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 소집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정관 및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회 관련 사항 공개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원장 후보자, 선거인 등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심의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비밀유지 등을 위한 서약서를 국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의 심의, 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제척, 회피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원장 후보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하거나 해당 후보자에 대한 회의 및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해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본인이 희망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회의비 등 지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제3장 선거인단 구성 등

제14조(선거인단) ① 정관 제10조 제6항에 따른 원장선출기구인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1.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명
2.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3.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명
4.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회원단체의 장 <개정 2022. 5. 27.>
5. 5개 대륙연맹 회장 또는 대륙연맹 회장이 지명한 임원 각 1명 등 총 5명
6. 태권도 9단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개정 2022. 5. 27.>
7.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8.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단,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9. 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명
10. 태권도 지도자 국내(KPS, 국기원 프로모션 시스템), 해외(KMS, 국기원 멤버십 시스템)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11. 국기원 직원 대표 1명
12. 국기원 해외파견사범 1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 다른 호의 사람과 중복해 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은 1회만 실시하고 재추천 및 재선정은 하지 않는다. 단,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5. 27.>

④ 제1항 제10호와 제12호가 제16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제1항 제10호의 구성 비율에 미달하거나 제12호의 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재선정 하지 않는다. <신설 2022. 5. 27.>

⑤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는 원장을 선출하는 해의 직전 3

년간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위해 추천한 응시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⑥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최근 2년간'은 원장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 5. 27.>

⑦ 선거인은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부터 포함)이어야 한다.

⑧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의 선거인은 국기원 사무처에 협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1. 제1항 제9호의 사람은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5개 대륙연맹의 국가협회별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사범(국기원의 사범 자격 보유자) 등 총 20명을 선정하며, 5개 대륙연맹의 선거인 수는 아시아 6명, 유럽 6명, 팬암 4명, 아프리카 2명, 오세아니아 2명으로 대륙별 배분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9.>

2. 제1항 제10호의 태권도 지도자는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의해 국내(KPS, 국기원 프로모션 시스템), 해외(KMS, 국기원 멤버십 시스템)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3. 삭제 <2022. 5. 27.>

4. 제1항 제9호의 국가협회와 제1항 제10호의 지도자는 선거인단 구성 시 국기원이 부여한 심사추천 권한이 유효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5. 제1항 제11호는 국기원 직원 중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며, 해당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1명을 선정한다. <개정 2020. 12. 9.>

6. 제1항 제12호는 국기원 해외파견사범으로 2년 이상 주재국에 파견돼 활동한 사범만 해당하며, 해당 사범 전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1명을 선정한다. <개정 2020. 12. 9.>

⑨ 제1항 제10호와 제12호의 사람은 국기원의 태권도 사범 자격 보유자이어야 한다. 단, 제10호의 해외 추천권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⑩ 선거인단은 정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제3조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일정을 고려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제15조(선거인 추천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14일 이내의 회신 기간을 정해 선거인을 추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에 따른 선거인단의 구성을 위해 국기원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 제1항 제9호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통해 국가협회가 결정이 되면 제1항과 같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제16조(선거인 명부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선거인 추천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14조에 따른 적격유무 등을 확인해 선거일 전 17일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으로 중복 추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중복된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 추천에 의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며, 동일한 사람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 추천한 사람의 변경을 요청한다. <개정 2020. 12. 9.>

2.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제10호와 제12호에 의한 사람이 중복된 경우에는 단체의 추천을 우선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③ 삭제 <2022. 5. 27.>

④ 선거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천된 경우에는 즉시 재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⑤ 선거인 명부에 최종 등재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7조(선거인 명부 열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면 장소를 정해 선거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간으로 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11일에 확정한다.

④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상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작성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의,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단체, 신청인,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⑥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중에 선거인 명부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선거인 명부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4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8조(후보자 자격) ① 후보자는 국기원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9.>

② 국기원 정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12. 9.>

③ 선거인단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 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

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하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제19조(기탁금)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5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5. 27.>

② 기탁금의 납부는 원화로 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해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해야 한다.

제20조(후보자 공모에 관한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5일부터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 등의 내용을 14일 이상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 국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함께 게시해야 한다.

제21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후보자 공고마감일 다음 날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는 공휴일과 관계없이 국기원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문(한글) 번역문도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1. 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태권도 및 체육단체가 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6. 삭제 <2022. 5. 27.>
7. 제19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사임(사직) 증명서(제18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 5.

27.>

10. 기타 관리상 필요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③ 삭제 <2022. 5. 27.>
- ④ 대한민국 외 국적의 후보자의 경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0호의 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 ⑤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않은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하는 등 후보자 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후보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된 때
- ⑧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⑨ 후보자 게재 순위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다만, 불참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번호를 추천할 수 있다.
- ⑩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받은 제2항의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22조(후보자 사퇴 신고 등)** 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국기원 담당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최종 확정),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기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 및 선거운동

- 제23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10일간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원장선거를 실시하며, 선거일 등은 선거일 전 25일까지 정하고,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제24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25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① 후보자, 선거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거사무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5. 27.>

1. 전화를 이용해 송화자,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3. 전자우편(컴퓨터 및 휴대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개정 2022. 5. 27.>
4. 명함(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을 나눠주는 방법
5.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단, 온라인투표 시 사전녹화영상을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재) <개정 2022. 5. 27.>

② 제1항 제5호의 소견발표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개시 전에 투표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소견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5. 27.>
2.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 등에 도착하지 않은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가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해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 등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등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5. 누구든지 소견발표회장에서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 등을 게재한 표지물을 지닐 수 없다.

③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원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사람
-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원장선거와 관련해 전화, 문자, 명함,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선거사무소는 후보자가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27.>
- 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2. 5. 27.>
- ⑥ 선거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실비지급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2. 5. 27.>

제28조(벌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선거에 관해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후보자에 한정한다)
 - 나. 선거인의 선거권 박탈
 - 다. 국기원 상벌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
 - 라. 추후 국기원 관련 모든 행사, 사업, 심사, 자격 취득 등에 응시, 참여 제한과 태권도 단체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태권도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에 한해 적용한다)

마. 국기원을 통해 취득한 품·단, 사범, 심판, 심사위원 등 각종 자격의 정지, 제명 조치 및 각종 증명서의 교부 제한

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동시에 처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정한다)

나.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온라인투표의 경우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시) <개정 2022. 5. 27.>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동시에 처할 수 있다.

② 제21조 제2항 제5호의 서약서(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인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 취소가 된다.

제29조(공정선거지원단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선거의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제30조(국기원 임·직원 중립의무 등) ① 국기원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기원 직원이 원장 선출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또는 행정정보조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립의무 준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5. 27.>

②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 임·직원이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국기원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개정 2020. 12. 9.>

제3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온라인 방법에 의한 투표를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9.>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④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으로 선거인인지 확인한 후 투표용

지를 교부해야 한다.

제32조(투표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단, 온라인투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5. 27.>

제3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 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국문(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는다. 다만,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생년월일을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선거인이 해당 후보자의 원장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대한민국 내 투표소에 한한다)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개정 2020. 12. 9.>

제35조(투표안내문 발송) ①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 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갖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 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들에게 투표안내문을 문자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제36조(온라인투표) ① 인터넷 기반의 개인용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를 이용한 투표 방식(이하 '온라인투표'라 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온라인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투표를 한다는 사실과 온라인투표 기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9.>

③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온라인투표와 다른 투표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제37조(투표, 개표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1명의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국기원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⑤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7.>

제38조(투표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외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 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제39조(기탁금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했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은 국기원에 귀속한다. <개정 2022. 5. 27.>

② 등록무효,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고 국기원에 귀속한다.

제40조(선거유효 등) ① 삭제 <2022. 5. 27.>

② 삭제 <2020. 12. 9.>

제41조(일비 등 지급) 국기원은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게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제6장 당선 결정

제42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 ② 삭제 <2022. 5. 27.>
- ③ 삭제 <2022. 5. 27.>
- ④ 삭제 <2022. 5. 27.>
- ⑤ 제1항의 투표에서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태권도 단이 높은 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태권도 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 단의 승단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⑥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등록된 후보자가 사망, 등록무효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제43조(당선무효) 원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제44조(원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 날에 즉시 서식【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원장 당선인을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 또는 당선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2. 5. 27.>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선거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후보자가 기탁한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결정의 직접적인 사유가 특정 후보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삭제 <2022. 5. 27.>

제46조(보궐선거)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위반사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49조(그 밖의 사항) 원장선거와 관련해 국기원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한 경우 협의해 결정한다.

제50조(언어 해석) 이 규정 및 이 규정 관련 각종 문서의 국문(한글) 원문과 영문 원문이 불일치하거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한글) 원문이 우선한다.

제5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따른 첫 원장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3항의 사임(사직) 적용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첫 원장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은 이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날로 한다.

③ 첫 원장선거에 따라 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의 임기는 새롭게 시작되며, 원장 당선인을 공고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제3조(위원의 겸임 제한) 이 규정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시에 운영되는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부 칙 <제정 2020. 12.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사유 확정일에 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실시사유가 발생한 원장 선거에 한해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부 칙 <제정 2022.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기원 원장선거 관리 위탁 신청서

위탁 선거명			
위탁 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소재지	주사무소	(전화번호:)	
	지사사무소	(전화번호:)	
임기만료일		보궐선거등 사유발생일	
관할구역			
구성원수		명(개인 , 법인)	
<p>「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탁자 ○ ○ 단체 대표자 ○ ○ ○ 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덧붙임: 정관 및 선거규정 각 1부.</p>			

- 주: 1. "정관 및 선거규정"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의 조직·활동 및 선거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합니다.
2. 지사사무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선거인 명부

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비고

주: 구분은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인단) 제1항의 해당 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 선거인 선정 및 명부 작성, 열람 등 국기원 원장선거 관련 사안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소속단체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라.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 선거인 선정 및 명부 작성, 열람 등 국기원 원장선거 관련 사안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각종 자격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라.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기원 선거인, 원장 후보자, 국기원 홈페이지 이용자 등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 선거인 선정 및 명부 작성, 국기원 원장선거 관련 사안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한 위탁선거 관리사무 수행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소속단체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마.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

성명	(한글)	(영문)		사진 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국적		성별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		
직업		전자우편 (E-mail)		@
보유 단		단	단 번호	
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내용			
20 년 월 일 실시하는 국기원 원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3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인적사항 등	
성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없음
징계내역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20 년 월 일
징계사유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② 징계내역 2	
	이하 생략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기원 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국기원 정관 및 원장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 원장 후보자 등록 등 국기원 원장선거 관련 사안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소속단체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라.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 원장 후보자 등록 등 국기원 원장선거 관련 사안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각종 자격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라.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거인, 국기원 임원, 국기원 홈페이지 이용자 등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기원 원장 후보자 등록 등 국기원 원장선거 관련 사안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한 위탁선거 관리사무 수행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소속단체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원장 임기까지 보관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삭제
마.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원장 당선인 공고

20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국기원 원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업 및 직위:

20 년 월 일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당 선 증

○ ○ ○

귀하는 20 년 월 일 실시한
국기원장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
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위탁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증 교부